

「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한 것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1항)
- 교육 불참자 대리인 출석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2항)
- 교육통지서 발송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3항)
-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상위법 위반 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.